

學界回顧

李均成*

I. 學會動向

本學會는, 高度產業社會의 進展과 함께 環境保全問題가 크게 클로즈업하게 된 데 따른 우리 나라 環境法分野의 組織的·體系的인 研究와 研究者 상호 간의 親睦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7年末에 그 發足을 본 이래 每年輪에도 불구하고 팔목할 發展을 보았다.

1983年度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與件에도 불구하고, 李尚圭會長을 위시한 모든 任員과 會員의 和合으로 다음 活動을 전개하였다.

(1) 文教部 政策課題研究助成費에 의한 研究推進

1982年度의 本學會의 重點의인 研究分野로서, 「排出賦課金制度에 관한研究」를 主題로 確定하여, 文教部의 政策課題研究助成費를 受領하였다. 이 研究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小課題로 나누어, 그 研究擔當者를 選定하여 研究를 마무리하였다.

- ① 排出賦課金制度의 意義와 比較法의 考察(鄭在吉)
- ② 排出賦課金制度의 運用과 그 問題點(尹瑞成)
- ③ 排出賦課金制度와 類似한 制度(權五乘)

(2) 學會誌 發刊

1981年度의 本學會 研究事業의 成果를 收錄한 學會誌「環境法研究」第4卷을 1982年 7月 30日字로 出刊하여, 各會員과 關聯 公·私機關과 團體에 頒布하였다. 이 學會誌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大氣保全法(鄭權燮)

* 本學會 幹事

- ② 驚音·振動 및 日照保護規制法制(全昌祚)
- ③ 水質·土壤保全法制(金鐵容)
- ④ 廢棄物規制의 改善方案(安基熙)
- ⑤ 海洋環境保全法制(李均成)
- ⑥ 韓國環境影響評價制度에 대한 몇 가지 研究(具然昌)
- ⑦ 資料: 1981年 改正 環境保全法
- ⑧ 學會回顧

(3) 研究發表會 開催

本 學會의 春季研究發表會에서 다음과 같이 主題別 發表와 會員 간의 討論을 가졌다.

- ① 日 時: 1983. 4. 30(土) 14:00~18:00
- ② 場 所: 韓國法學院 會議室
- ③ 主題發表:
 - (가) 環境行政訴訟의 要諦——要件審理와 家體審理의 調和(千柄泰)
 - (나) 海底石油探查와 海洋環境保全(李相敦)

II. 法制의 整備

1983年은 '81 改正 環境保全法의 下位法令인 同法施行令과 同法施行規則을 전면 改正함으로써 環境保全法의 基本骨格을 다진 한편, 國會의 通過가 보류되어 오던 「環境污染防止事業團法」이 통과됨으로써 環境問題에 대처할 새로운 機構 설치의 길을 터 주고 環境保全事業의 活性化를 촉구하게 되었다.

(1) 環境保全法의 整備

① 環境保全法施行令

環境保全法의 改正('81.12.31)의 委任事項과 그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은 大統領令 第11101호('83.4.13)의 改正內容은 環境影響評價

制의 補完 등 環境權實現을 의식한 성격으로 크게 진전되었다.

첫째, 종래의 막연하게 규정된 環境影響評價가 대상 사업의範圍에서 한 걸음 앞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구체적인範圍와 협의 요청시기를 명문화한 점,

둘째, 環境廳長이 自然生態保全地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

세째, 環境廳에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효율적인 기술·검토를 위한 環境技術監理團의 설치에 따라 그 구성·업무 등을 규정한 점,

네째, 排出賦課金의 對象, 算定方法 및 基準 등 세부적인 시행사항을 규정한 점 등이 특이하다.

② 環境保全法施行規則

環境保全法 및 同法施行令이 改正됨에 따라 그 委任事項과 필요한事項을 전면 규정한 것으로, 그 骨字는 다음과 같다.

첫째, 自然環境調查基本計劃 중 10年에 1회 실시하는 全國調查는 中央環境諮詢委員會, 매년 1회 실시하는 地域調查는 自然生態部門委員會의 謩問을 거치도록 한 점,

둘째, 排出施設의 移轉命令時 2년의 範圍內에서 移轉期間을 정하도록 한 점,

세째, 違法行爲로 인하여 變更命令을 받은 排出施設管理人은 2年이내에 당해 排出施設管理人이 될 수 있도록 한 점,

네째, 環境施設業에 종사하는 環境要員의 훈련을 위하여 훈련기관의 지정, 훈련과정 및 훈련경비 등 세부사항을 정한 점 등이다.

(2) 環境汚染防止事業團法의 制定

이 法은 法律 第 3657 號('83.5.21)로 環境保全法 第 62 條의 3의 규정에 의한 環境汚染防止事業團(法人)을 설립하여 環境汚染防止事業을 效率적으로 수행함을 目的으로 한다.

그 主要內容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同法人의 설립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環境汚染으로 인한 被害의 救濟 및 事業者의 防止施設投資에 대

한 長期低利融資를 위한 防止基金의 管理·運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세째, 同事業團에 運營委員會를 두어 사업의 기본 방침과 운영사항을 심
의하도록 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III. 研究活動

1982年이후의 環境關係研究活動은 環境廳의 政府 차원에서의 노력은 물론,
民間活動 차원에서의 環境保全協會의 활동은 활목할 만했다.

(1) 環境廳의 活動

環境廳은 1982年 10月 15日 開廳이후의 環境座標의 설정을 쟁기는 뜻
에서 環境白書인 「環境保全」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國立環境研究所에서는
1983年 5月 環境分野論文抄錄集 第1輯을 발간함으로써 環境關係論文抄
錄을 한 권으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애썼다.

또한, 環境廳은 정부로 하여금 環境保全運動에 공이 큰 環境保全部門 專
門家 5명(권숙표, 차철환, 박노경, 박창근, 노재식)에게 국민훈장을 수여
하도록 노력하였다. 經濟成長 뜻지 않게 環境保全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
정책 전환의 의지로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1983年에 들어와서의 研究活動은, 6月 11日 環境廳과 서울大學校環境
計劃研究所가 共同主催로 ‘都市廢棄物管理의 合理化方案에 관한 세미나’
를 開催하였다.

同年 6月 17日에는 環境廳 主管으로 ‘環境教育에 관한 심포지움’을 開
催하였다. 國立環境研究所에서는 同年 6月 10日 ‘先進環境을 向한 保全
對策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同年 6月 20日~25日 간 環境影響評
價 워크숍을 가졌다.

(2) 環境保全協會 등의 활동

協會는 매년 발간되는 環境保全關係 학술·기술의 綜合研究誌인 「環境
保全」第3卷 第12號('82)를 발간했으며, 1983年 9月부터는 環境廳으

로부터 環境保全法에 의한 環境要員의 法定義務教育의 實시 기관으로 指定 받아 全國 排出施設管理人의 環境教育을 實시함으로써 민간 環境教育의 활동 의욕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全國民의 環境權意識의 舉揚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3) 環境關係論文

- 權肅杓, 「人口 增加와 環境管理」公害對策, '82.12.
- 安基熙, 「持續的 經濟成長을 위한 環境保全戰略」公害對策, '82.12.
- 安基熙, 「費用負擔과 財政措置에 관한 考察」公害對策, '83.2.
- 李相教, 「國際公害에 관한 國際法上의 國家責任」中央大 論文集 第18輯, '83.4.
- 鄭 勇, 「環境保全을 위한 保健學的研究과 方向」公害對策, '83.6.
- 盧在植, 「降水物의 酸度에 관한 研究」環境保全 第3卷, '83.7.
- 申鉉德, 「環境問題에 대한 接近方法의 考察」環境保全 第3卷, '83.7.
- 具然昌外, 「環境影響評價의 法的・行政的 考察」環境保全 第3卷, 1983.7.
- 李相教, 「環境保護法理로서의 公共信託理論과 海岸 및 江岸地域의 環境法的 問題에 관한 小考」, 法曹 第32卷 第9號・第10號, '83.9~10.
- 申鉉德, 「食品 및 藥品污染에 관한 研究」, 慶熙大 產業環境研究所 論文 第1輯, 1983.12.
- 金政炫, 「세탁물에 의한 廢水處理에 관한 研究」慶熙大 產業環境研究所 論文 第1輯, 1983.12.
- 安基熙, 「環境影響評價와 住民參與」慶熙大 產業環境研究所 論文 第I輯, 1983.12.
- 李相教, [書評] : Thomas J. Schoenbaum, "Environmental Policy Law" (N.Y.: Foundation Press, 1982).

(4) 環境關係著書

- 具然昌, 環境法論, 法文社, 1981.12.25.

- 安基熙, 環境管理論, 國文社, 1982. 9. 10.
- 朴昌根, 環境污染概論, 綠苑出版社, 1983. 6. 27.
- 安基熙, 環境學, 韓國理工學社, 1983. 7. 15.